

의안 번호	2480	<p>【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5. 10. 2.(목)
-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0. 2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0. 16.(목)

## 2. 제안이유

-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조례 구성을 일반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과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주민 및 관계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 아이놀이뜰공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조례 구성 개정(장으로 구분)

- 제1장 총칙
  - 조례 목적, 용어 정의, 적용범위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- 제2장 어린이공원 관리
  - 관리계획 수립, 행위제한, 안전점검 등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(안 제4조 ~ 제10조)
- 제3장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
  -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 ~ 제23조)

### 나.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)

- 아이놀이뜰공원 운영을 위한 “운영자”, “아이놀이뜰 시설”,

“누리집”, “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”에 대한 용어 정의

다.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규정(안 제11조)

라. 아이놀이뜰공원 이용 시간 등,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, 휴장일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 ~ 제14조)

마. 아이놀이뜰공원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,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5조 ~ 제17조)

바. 아이놀이뜰공원 사용권 양도 금지 등, 사용자 수칙,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8조 ~ 제20조)

사. 아이놀이뜰공원 손해배상 등, 사용자 유의사항 게시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1조 ~ 제22조)

아. 아이놀이뜰공원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3조)

자. 아이놀이뜰공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4조)

차. 별표 신설

○ 별표 1.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(제15조 관련)

○ 별표 2. 사용료 감면 기준(제16조 관련)

○ 별표 3. 사용료 반환 기준(제17조 관련)

○ 별표 4. 시설 사용자 수칙(제19조 관련)

#### 4. 근거법규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제20조, 제40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이 준공되고 아이놀이뜰 내에 있는 그물놀이시설이 유료로 이용됨에 따라 그물놀이시설의 이용시간, 예약 방법, 사용료, 이용자 수칙, 위탁관리 등 그물놀이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
- 기존 조례가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에 따라 3장으로 구분하여 제1장 총칙, 제2장 어린이공원 관리, 제3장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으로 작성하였음
- 상위법인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40조에 공원시설 위탁관리,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**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**  
안 제16조(사용료 감면) 별표2의 사용료 감면기준에서 100분의 30 경감 대상 중 다목 근거 법령인 제명 「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로 2025. 1. 13.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제명도 변경되었으므로 현 조례명으로 수정이 필요함

# 근거법규

##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**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**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.

- 1. 생활권공원 :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·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
  - 가. 소공원 :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  - 나. 어린이공원 :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
  - 다. 근린공원 :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·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

**제20조(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)**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"공원관리청"이라 한다)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(이하 "공원수탁관리자"라 한다)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**제40조(입장료 등의 징수)**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-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.
- 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